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20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1일

중소기업청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13.4.30 국회의결, '13.5.28 공포, '13.11.29 시행)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환급해 줘야하는 금액의 비율,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 개정예 따라 수

반되는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원, 상품권 발행업무 수탁자, 시장 경영진흥원의 운영 규정을 변경·삭제하고,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능 사무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고자 함.

또한, 법 개정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지정대상 및 절차,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 방법 등 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록 제한업종, 환급금액의 비율, 가맹점 등록 및 등록 취소권한 위임” 신설

- 1)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을 종이상품권(5천원·1만원·5만원권),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정액카드*, 충전식 카드)로 함.
(안 제9조의2)

* 정액카드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규정

- 2)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도·소매업, 용역업이 아닌 업종과 도·소매업, 용역업 중 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등 41개 업종*으로 함.(안 제9조의3)

* 도·소매업, 용역업 중 가맹 제외되는 18개 업종은 <별표>로 규정

- 3) 물품 등을 구매한 후 환급 요청에 응하여야할 사용금액의 비율은 권면금액의 60%로 함.(안 제9조의4)

4)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등록 취소 업무를 지방중소기업
청장에게 위임(안 제33조의2)

나. “온누리상품권 업무의 위탁,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1)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시장경영진흥원장에게 위탁(안 제33조의2)
- 2) 온누리상품권 변칙유통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35조 및 별표2)

가맹점 종류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개별가맹점 (상인)	물품 등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환전	정상 가맹점	1차 200, 2차 300, 3차이상 600
		가맹자격이 없는 가맹점	1,000
환전대행가맹점 (상인회)	가맹점이 물품 등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 권임을 인지하고 환전 대행한 경우		1차 500, 2차 1,000, 3차이상 2,000
	가맹점이 아닌 자에 위해 환전을 대행		1차 1,000, 2차 1,500, 3차이상 2,000

다. “시장정비사업 심의회 구성원, 시장경영진흥원 운영, 고유식별정
보의 처리 가능 사무”의 개정 또는 삭제

- 1)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원, 상품권 발행업무 수탁자를 시
장경영진흥원장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으로 변경(안 제
제19조제2항 라호)
- 2)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통합함에 따라 시경원의 운영 규정을 삭제함(안 제33조)
- 3)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능 사무를 공동상품권의 발

행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훼손상품권 교환, 환전,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 취소 업무로 변경(안 제34조의2)

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별표 1, 신설) 및 현행 별표의 개별기준에 온누리상품권 변칙유통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현행 “별표” → “별표 2”로 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 문화관광형시장 지정대상 및 절차 규정(제6조의2, 신설)

- 지정대상 : 상인조직을 보유한 시장 또는 상점가
- 상인조직의 지정 신청 : 지정신청서<신설>를 작성하여 상인회 총회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이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인회 의견 청취
- 시·군·구청장의 지정 승인 신청(→시·도지사)시 첨부서류 : 승인신청서<신설>, 신청 사유서, 소요예산 조달계획, 지정 효과 등

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 청장이 고시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중기청에 제출(제8조의2, 신설)

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신청서,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2호의3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전화 : 042-481-4561, Fax : 042-472-7935)

대통령령 제 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종류는 종이상품권과 「전자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이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 1만원으로 하고, 「전자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5만원, 10만원으로 한다.

제9조의3(등록 제한업종) ① 법 제2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제외한 업종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 중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제9조의4(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라목 중 “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시장경영진흥원”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2. 법 제26조의6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경영진흥원”을 “「소기업 및 소상공

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제34조의2 중 “법 제26조제3호에 따른 공동상품권의 발행”을 “법 제26조2제1항에 따라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및 훼손된 온누리상품권의 교환, 제26조의3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제26조의6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취소”로 한다.

제35조 중 “법 제74조제1항”을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중 “2.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하여 “별표2”로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법 제74조제1항제1호	가) 1차 위반
가) 1차 위반		500
나) 2차 위반		1,00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나. 제26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법 제74조제1항제2호	1) 환전대행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가) 1차 위반		500
나) 2차 위반		1,00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p>2) 환전대행가맹점이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p> <p>가) 1차 위반</p> <p>나) 2차 위반</p> <p>다) 3차 이상 위반</p>		<p>1,000</p> <p>1,500</p> <p>2,000</p>
<p>다. 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p> <p>1) 1차 위반</p> <p>2) 2차 위반</p> <p>3) 3차 이상 위반</p>	<p>법 제74조제2항제1호</p>	<p>100</p> <p>300</p> <p>500</p>
<p>라.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p> <p>1) 경과일수 10일 이내</p> <p>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p> <p>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p> <p>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p> <p>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p> <p>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p> <p>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p> <p>8) 경과일수 365일 초과</p>	<p>법 제74조제2항제2호</p>	<p>10</p> <p>20</p> <p>30</p> <p>50</p> <p>80</p> <p>100</p> <p>200</p> <p>300</p>
<p>마.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p>	<p>법 제74조제2항제2호</p>	<p>300</p>

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	--

부칙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제3호라목, 제33조, 제34조제1항("시장경영진흥원"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등록 제한업종(제9조의3 관련)

표준산업분류	가 맹 점 제 한 업 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중	귀금속 도매업
46722 중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	주점업 단, 생계형 기타주점업(56219) 제외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곤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5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게임장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은 제외
91249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생계형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9조의2(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종류는 종이상품권과 「전자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종이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 1만원으로 하고, 「전자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5만원, 10만원으로 한다.</p>
<p><신 설></p>	<p>제9조의3(등록 제한업종) ① 법 제2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제외한 업종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 중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p>
<p><신 설></p>	<p>제9조의4(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p>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 2. (생략)
-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다. (생략)

라. 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시장경영진흥원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마. 바. (생략)

③ (생략)

제33조(시장경영진흥원의 운영)

법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은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내역 및 그 해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을 말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 3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 바.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71

제34조(업무의 위탁) ①중소기업
청장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경영진
홍원의 대표에게 위탁한다.

1. · 2. (생략)

<신설>

3. ~ 5. (생략)

② (생략)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청장(법 제71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6조제3호에 따른 공동상품권
의 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
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
한다.

1.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
의 등록

2. 법 제26조의6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
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
인시장진흥공단-----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
누리상품권의 발행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법
제26조2제1항에 따라 발행된 온
누리상품권의 판매 및 훼손된 온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누리상품권의 교환, 제26조의3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제26조의6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취소-----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문화관광형시장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①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신청서에 전통시장 또는 상점에 있는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형시장 지정대상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보유한 시장 또는 상점가를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을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지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 등 지정 승인신청 사유서

2.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3.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효과
 4.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의 개략적인 내용
 5.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6.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의 지정에 동의한 회의록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외에 문화관광형시장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의 가맹신청) 상인 및 상인조직은 법 제2조제13호에 다른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

시장 등 개요	시장 등 명			
	시장 등 지번 및 면적	지번		
		대지(㎡)	건물(㎡)	
		영업장 면적(㎡)	점포 수(개)	
	신청사유 및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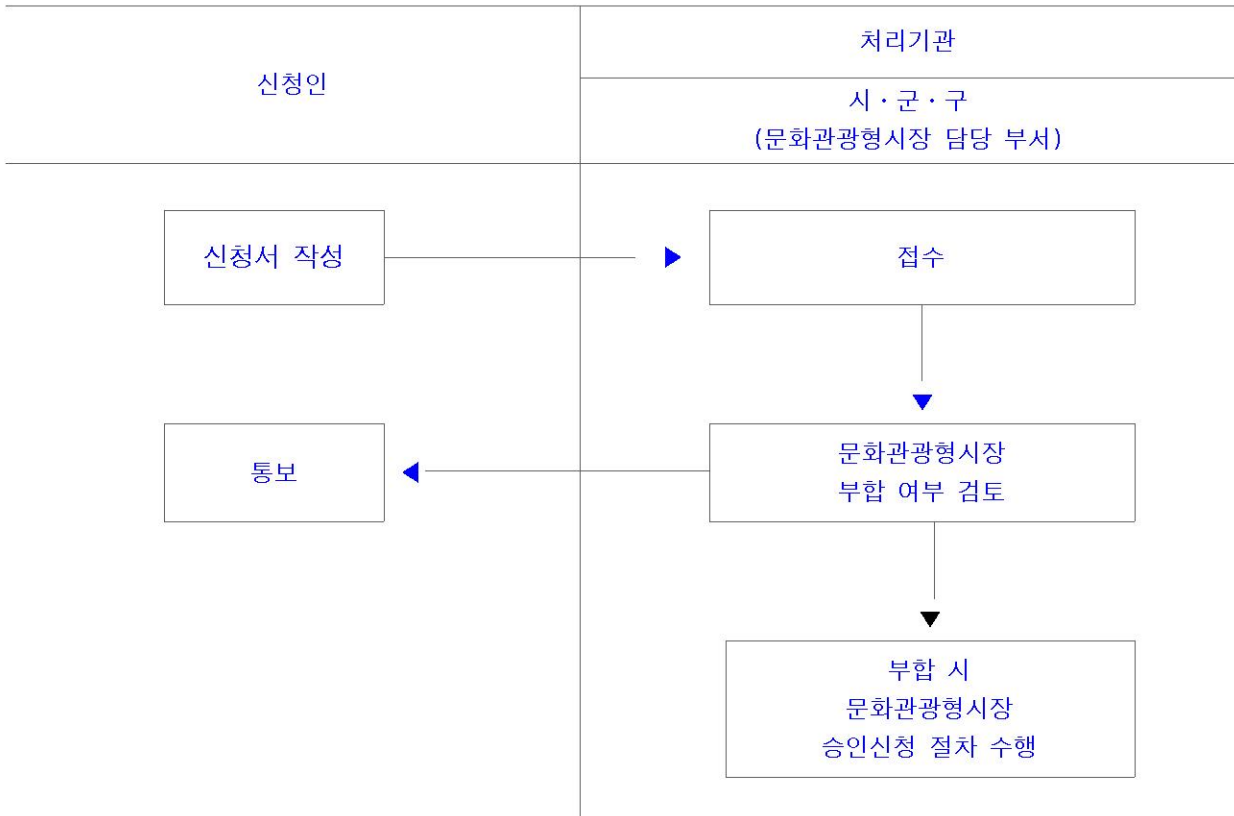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 기관	지자체명	기관장 성명
	담당부서	부서장(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시장 등 개요	시장 등 명			
	시장 등 지번 및 면적	지번		
		대지 (㎡)	건물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개)	
	사업목적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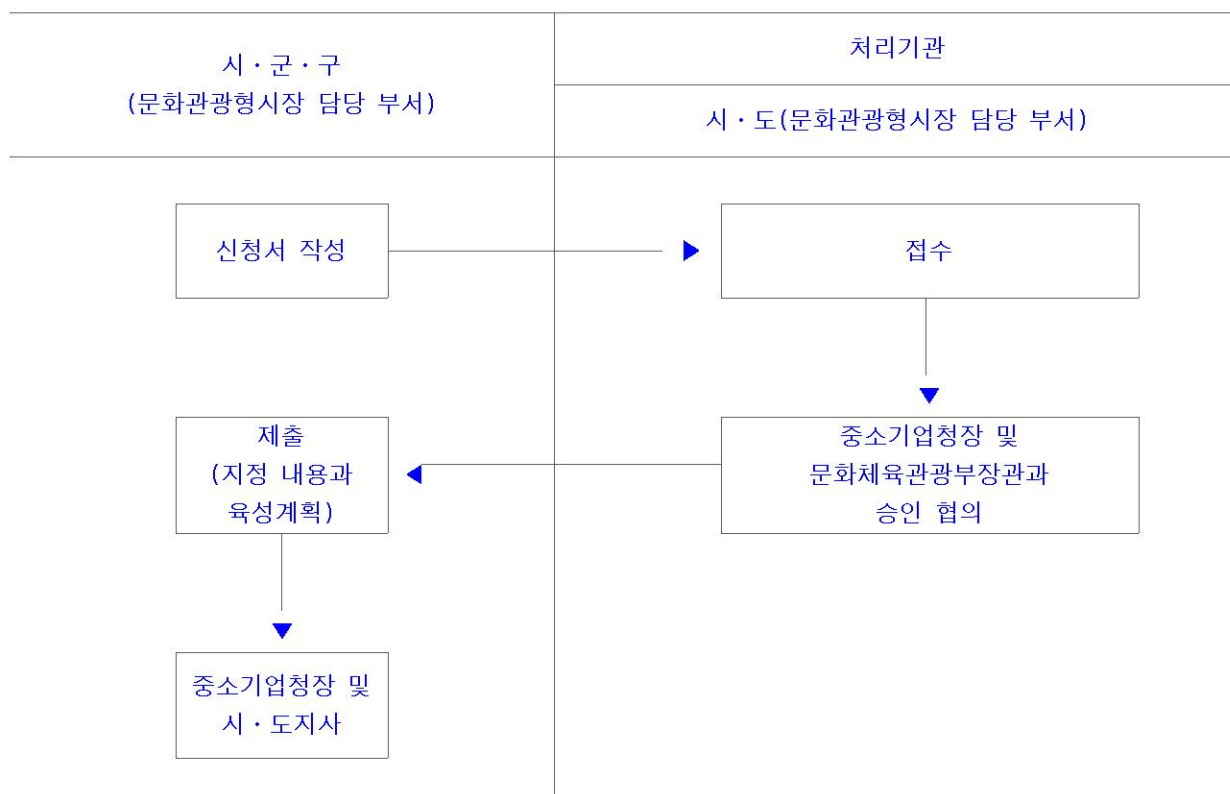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 등 지정 승인신청 사유서 2.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3.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효과 4.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의 개략적인 내용 5.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6.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6조의2(문화관광형시장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①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신청서에 전통시장 또는 상점에 있는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문화관광형시장 지정대상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보유한 시장 또는 상점가를 말한다.</u></p> <p><u>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을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u>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승인을 신청하려면</u></p>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지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 등 지정 승인신청 사유서

2.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3.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효과

4.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의 개략적인 내용

5.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6.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의 지정에 동의한 회의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외에 문화관광형시장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의 가맹신청) 상인 및 상인조직은 법 제2조제13호에 다른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온누리상품

권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